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56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천하람 · 이주영 · 이준석
이개호 · 신영대 · 김교홍
허영 · 최형두 · 서범수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Merger and Acquisition, M&A)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의 원형은 1997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서 유래하여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및 민간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하여서는 입법적 공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남.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 제도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가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안 제9조제1항)

1) 현행 기업결합 관련 기준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총액이 아무리 적어도 매출액이 기준 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이 되고, 매출액이 적더라도 자산총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충분히 커도 모두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양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2) 현행 신고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3천억원 이상인 기업(피인수 기업은 3백억원 이상)은 사후신고를,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천억원 기준은 2017년, 2조원 기준은 1997년부터 적용되어 온 바,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3) 이에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계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규제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이 5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규모회사로 규정하여 해당 기준 금액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함.

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 변경 및 거래대금의 규제환산매출액 간주(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1)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결합 후 최종기업”을 통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결합 전 개별 회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을 규율할 수 없는 상황임.
- 2) 더불어 회계장부상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귀결되어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3) 이에 둘 이상의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이 각각 5백억원 이상이고, 합산하여 5조원 이상일 경우 이들 회사가 서로에 대하여 또는 공동으로 기업결합을 할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출자받는 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 제외(안 제11조제6항제1호).

1) 기업결합의 유형 중 합병, 영업양수, 신규 설립은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과 달리 한번 기업결합이 성립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3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기업이 해당 유형의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신고로 규율하여 사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불승인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기업결합 유형 중 합병, 영업양수, 신규 설립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은 사후신고대상으로 각각 재정비함.

라.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 완화(안 제20조제3항제4호).

1)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소유하려면 지분의 100%를 보유해야 하고, 해당 벤처투자회사 등은 벤처투자조합(펀드)을 설립할 때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자기 지분으로 확보하여야 함.

2) 그러나 펀드 설립 시 운용사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출자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이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활발한 투자 활동과 다양한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의 집적 효과 극대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함.

3)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지분율을 규제하려는 목

적은 투자회사가 벤처투자를 빙자하여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회사가 방만한 펀드 운용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함이나, 현행법 제 20조제3항제5호에 의해 관련 펀드를 통한 계열사 등 우회 지원은 이미 불가능하고, 투자회사의 펀드 미참여는 다른 투자자에게 펀드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펀드 자체가 미성립될 가능성이 큼.

- 4) 이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지분을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 1(이하 “규제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이 5조원 이상인 회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을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규제환산매출액이 각 5백억원 이상이고 규제환산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조원 이상인 둘 이상의 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가 서로 또는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회사인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별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이라도 해당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금액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출자받는 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본다.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및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 회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u> (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 ----- ----- ----- ----- ----- ----- ----- <u>. ---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 1(이하 “규제환산매출액”이라 한다)</u> <u>이 5조원 이상인 회사</u> ----- ----- ----- -----.
1. ~ 5. (생략) ② ~ ⑤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u>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u>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u>규제환산매출액이 각 5백억원 이상이고 규제환산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조원 이상인 둘 이상의 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업결합신고</u>

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회사”라 한다)가 서로 또는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 5. (현행과 같음)

② 개별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이라도 해당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금액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출자받는 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본다.

<삭 제>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생략)

⑦ ~ ⑪ (생략)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제1항제4호 -----

----- 제
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삭 제>

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illegible]

<삭 제>

<u>자금 총액의 100분의 40</u> <u>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u> <u>자한 투자조합</u> 나.·다. (생략) 5.·6. (생략) ④·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